

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축산물·시설 관리방법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◎ 농림축산식품부(이하, ‘농식품부’)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“농업·농촌 미세먼지 대응 TF”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.
- ◎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 시 행동요령,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,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, 영농폐기물·부산물 소각금지 이다.
 -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㎛(마이크로미터, 0.01mm)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 및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.
- ◎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후렛을 10만 부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, 농어촌공사,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하였다.

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농업인 행동요령

1 농작업간 행동요령

비상저감조치 발령 전

-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(주의보·경보) 조치사항, 보건용 마스크 착용방법, 인근 보건소·병원 위치 확인 등 대응요령 숙지
 - * (부록 2)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참조
- TV, 인터넷, 콜센터(131)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미리 구비
 - *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



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- 실외 농작업을 자제하되,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, 힘든 작업은 최소화
 - * 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충분히 준비하고 수시로 교체
- 건조한 농경지 경운정지 등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 지양
-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
- 농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
 -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, 필요 시 인근 보건소 및 병원 내원
- 농작업 후 얼굴과 손 등 온몸을 깨끗이 씻고,
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·야채 섭취 및 충분한 숙면



2 농작물, 농업 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 요령

비상저감조치 발령 전

- TV, 인터넷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
- 미세먼지 세척을 위한 급수시설 및 세척 장비 작동 여부 등 미리 점검
- 비닐 하우스와 축사, 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 점검
- 야외 건초·볏짚,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 차단



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- 비닐하우스와 축사·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
- 미세먼지로 작물의 일조가 부족할 경우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광 보충
-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 세척
- 노후 농기계 및 트럭을 활용한 야외 농작업 최대한 지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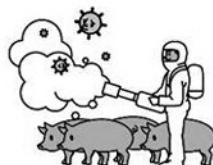
효과적인 시설물 세척방법

- ◆ 비닐하우스 : 수용성세제를 0.5% 정도로 희석하여 동력분무기에 담아 살포 후 맑은 물로 2차 세척
- ◆ 유리온실 : 옥살산(oxalic acid) 4% 용액을 유리 바깥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주고 30분 뒤에 물로 세척

3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요령

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

-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KET)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축산악취 저감 노력 필요



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● 축산농가 행동요령

- (축사 내부)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 가동(해제 시까지)
 - 가축에게 미생물제제 급여,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 살포(1일 1회)
 - 양돈·가금 등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흡수액 교체(보충) 및 가동 최대화
 - 한육우 등 개방형 축사의 경우 깔짚 바닥 뒤집기 중지
- (축사 외부) 퇴비·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, 퇴비사 미생물제제 살포(1일 1회) 및 비닐(천막) 덮기(해제 시까지)
 -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일시중단하고,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 실시

● 공동자원화시설 및 퇴비공장 관리 요령

- 퇴비장에 미생물제제 살포, 퇴비화시설의 교반기·송풍기 가동 중단
- 시설 외부에 적치된 퇴비 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
- 악취저감시설 흡수액 교체 및 가동 최대화, 시설 주변 및 인근 도로 물 청소 실시

● 공동방제단

- 소규모 축산농가, 밀집사육지역, 전통시장 등 주변에 물 살포

4

영농폐기물 ·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

영농폐기물 · 부산물 소각시 문제

- 영농폐기물 · 부산물 및 논 · 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
-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

※ 폐기물 관리법 상 벌칙 사항(제68조제3항) :
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
매립,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- 폐비닐,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
 - (재활용 가능품목)
멀칭비닐,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
 - (재활용 불가능품목)
부직포,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
- 벼 · 보릿대, 고춧대, 깻단,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
 -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, 로터리처리
- 논 · 밭두렁 태우기 금지
 - * 논 ·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에 있어, 해충류는 11%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방제되나,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,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악충류가 89%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야기

